

2018학년도

제5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

1. 일 시 : 2018년 12월 19일(수) 10:00

2. 장 소 : 화도관 2층 대회의실

3. 대학평의위원회(11명)

■참석의원 : 송영출, 정인영, 이정훈, 김재요, 정동훈,
천성오, 김태훈, 한상빈, 고민석 (9명)

■불참의원 : 김기섭, 이재현 (2명)

4. 안건

- 1)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(안)
- 2) 직제규정 개정(안)
- 3) 사무분장 규정 개정(안)
- 4) 교원 윤리 규정 제정(안)
- 5) 외국인 학생에 대한 내규 개정(안)
- 6) 여비 규정 개정(안)
- 7) 교수학습센터 운영 규정 개정(안)
- 8) 광운MOOC센터 운영 규정 제정(안)
- 9) 자금운용위원회 규정 폐지(안)
- 10)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정(안)

5. 회의 내용 및 결과

- ◆ 성원 확인 후(총 11명 중 9명 참석) 기획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
- ◆ 제7대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위촉과 관련하여 기획처장이 위원들에게 대학평의원회 구성, 규정, 임기에 대해 설명하다.
- ◆ 의장/부의장 선출에 관하여 논의하고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따라 '호선'을 통해 송영출 교수를 제7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추대하고, 천성오 팀장을 대학평의원회 부의장으로 추대하다.
- ◆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, 의장의 요청으로 교원 윤리 규정은 교무처장이, 여비 규정, 자금운용위원회 규정, 기금운용심의회 규정은 총무처장이, 이외 안건을 기획평가팀장이 설명하는 것을 요청하였고, 이에 의원들이 동의하다.

◎ 안건

1)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- 주요 내용
 - 광운한림원 → 글로벌교육센터로 변경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2) 직제 규정 개정(안)

- 주요 내용
 - 외국인 학생 주임교수제 운영
 - 광운한림원 → 글로벌교육센터로 변경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3) 사무분장 규정 개정(안)

- 주요 내용
 - 교수학습센터 : 광운MOOC센터 업무 분장 내용 삭제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4) 교원 윤리 규정 제정(안)

- 주요 내용
 - 광운대학교 교원으로서 지켜야할 가치판단과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도덕성을 확립하고, 대학 설립이념과 교육목표를 실현
- 교원 윤리 규정 제정과 관련하여 타대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였고, 교무처장이 최근 타대학 이해관계자의 성적, 채용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특혜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앞으로 학사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 우리대학 교원의 가치판단과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도덕성을 확립하기 위해 교원 윤리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.

- 교원 윤리 규정을 제정하는 형태보다 교원 윤리 관련 선언문, 교원 윤리 헌장과 같은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.
- 제10조②항 '자신이 수행하는 직무', '이해와 관련되는 경우'에 대한 의미 해석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다.
- 제10조②항 '이해와 관련되는 경우'의 표현이 다소 불분명하므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해와 관련되는지 별도로 해석할 수 있는 기구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.
- 제10조②항 '기타 임원 및 교직원'과 관련하여 대학 내에 임원이 없으므로 문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.
- 교원 윤리 규정의 내용이 현재 수정해야 할 부분이 일부 발생하였고 대학별로 차이점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며 현재 문구에 대한 교내 교원의 거부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 하기로 하다.
- **의결내용 : 관련내용을 보완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 하기로 하다.**

5) 외국인 학생에 대한 내규 개정(안)

- 주요 내용
 - 외국인 학생 주임교수제 운영
- 14조 ②항의 '외국인 주임교수'를 '외국인 학생 주임교수'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결정하다.
- **의결내용 :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.**

6) 여비 규정 개정(안)

- 주요 내용
 - 2명 이상의 동일 목적 출장시 상위 직급자 기준의 여비 지급 적용항목 확대
 - 총장·부총장·교수 국내 출장시 지급기준액 인상
 - 교수 국외 출장 지급기준액 인상, 국가 및 도시 등급 갱신, 환율 기준 명시
- 여비규정에서 (부총장), (대학원, 학처, 실, 관장), (교수) 등 세 그룹으로 교원이 구분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다.
- 타대학 규정, 공무원 여비규정 등 여러 규정을 비교, 참고하여 지급되고 있으며, (대학원, 학처, 실, 관장) 그룹에는 직원 처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총무처장이 답하다.
- 교수가 연구비를 수주하는데 여비 규정에 (대학원, 학처, 실, 관장)과 (교수)로 직급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다.
- 현재 학교의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교원과 직원을 구분하여 교원부분만 여비 인상이 된다면 교내 교직원의 갈등이 발생할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.
- (교원 부교수 이상/직원 5급 이상)과 (교원 조교수 이하/직원 6급 이하)로 구분된 여러 대학이 있음을 설명하며 우리대학도 교원부분만 상향하는 것이 아닌

교원/직원 여비 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.

- 현재 우리대학의 출장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규정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타대학 사례조사와 산단과의 협의를 통해 여비 상향 및 직급 구분 등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총무처장이 답하다.
- **의결내용 : 관련내용을 보완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 하기로 하다.**

7) 교수학습센터 운영 규정 개정(안)

- 주요 내용
 - 광운MOOC센터 업무 분장 내용 삭제
- **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**

8) 광운MOOC센터 운영 규정 제정(안)

- 주요 내용
 - 제1장 총칙 : 센터의 직제 근거 및 명칭 규정
 - 제2장 조직 : 조직 및 위원회 규정
 - 제3장 업무 : 업무분장 규정
- **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**

9) 자금운용위원회 규정 폐지(안)

- 주요 내용
 -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정으로 인해 폐지
- 자금이 기금을 포함하는 의미라면 자금운용위원회 규정을 폐지하고 기금운용 심의회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형태로 비취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다.
- 기금운용심의회 설치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(기금운용심의회 구성)에 따라 기금 보유 대학의 의무가 되었으며, 기존 자금운용위원회 제2조(기능)에서 '여유 유동자금 및 고정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'으로 위원회 기능을 정의하고 있어서 교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금이 아닌 적립금 형태의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는 것이라 답하다.
- **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**

10)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정(안)

- 주요 내용
 -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(기금운용심의회 구성)에 근거하여 기금 보유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의무화
- **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**

6. 폐회

안건에 대해 의장이 의원들의 추가 의견을 묻고 폐회를 선언하다.